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신청 시 필수확인사항

1.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은 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이상 수입이 불가합니다.
   (화학물질,고유번호 알 수 없는 화학물질들(A, B 등)은 하나의 신규화학물질(X물질)로 보며, 총 합산 기준으로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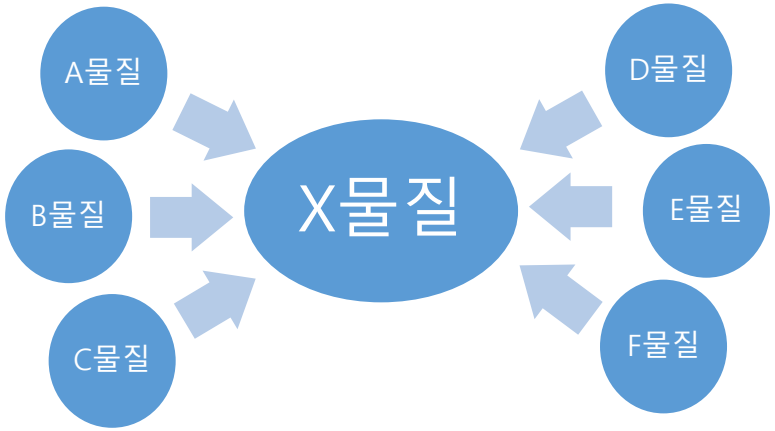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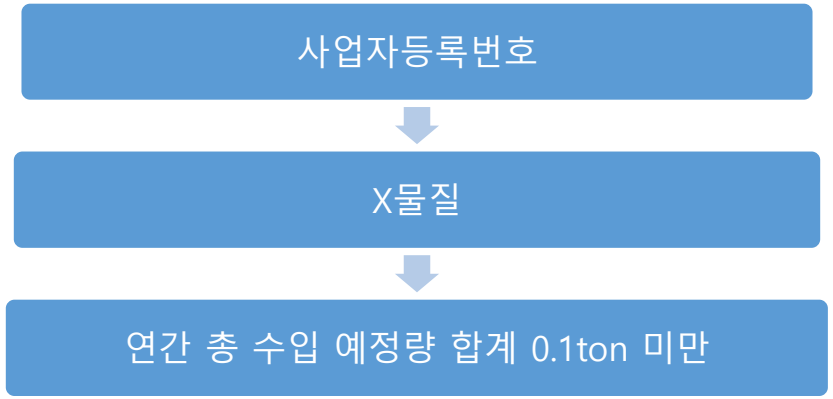

2.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 제조·생산자가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 유해화학물질에 해당 할 경우 영업비밀 신청이 불가합니다. (화학물질정보시스템 ncis.nier.go.kr/main.do 검색)

※안내※

선임된자의 신청 여부는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유권해석이 완료되면 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.

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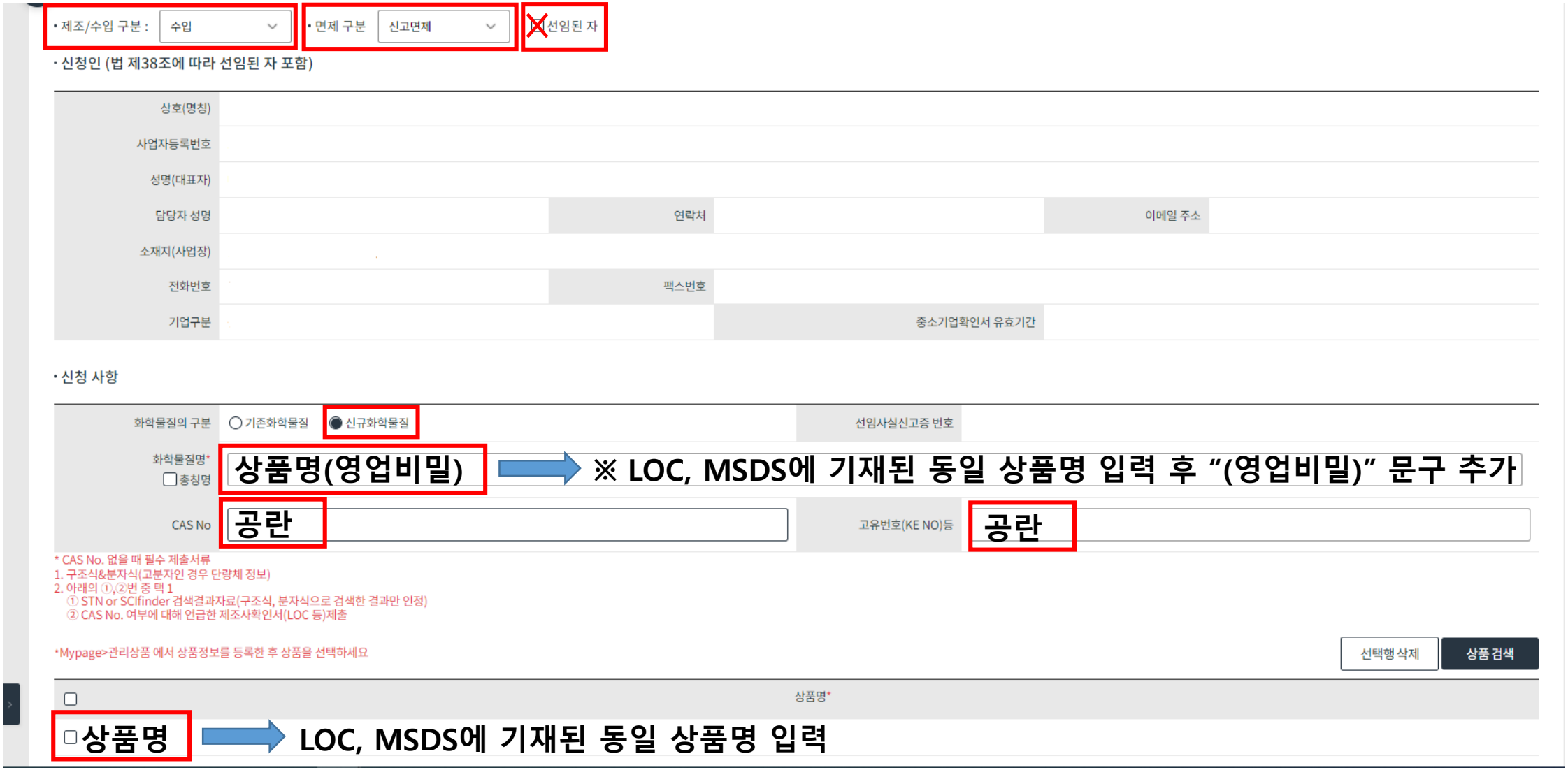

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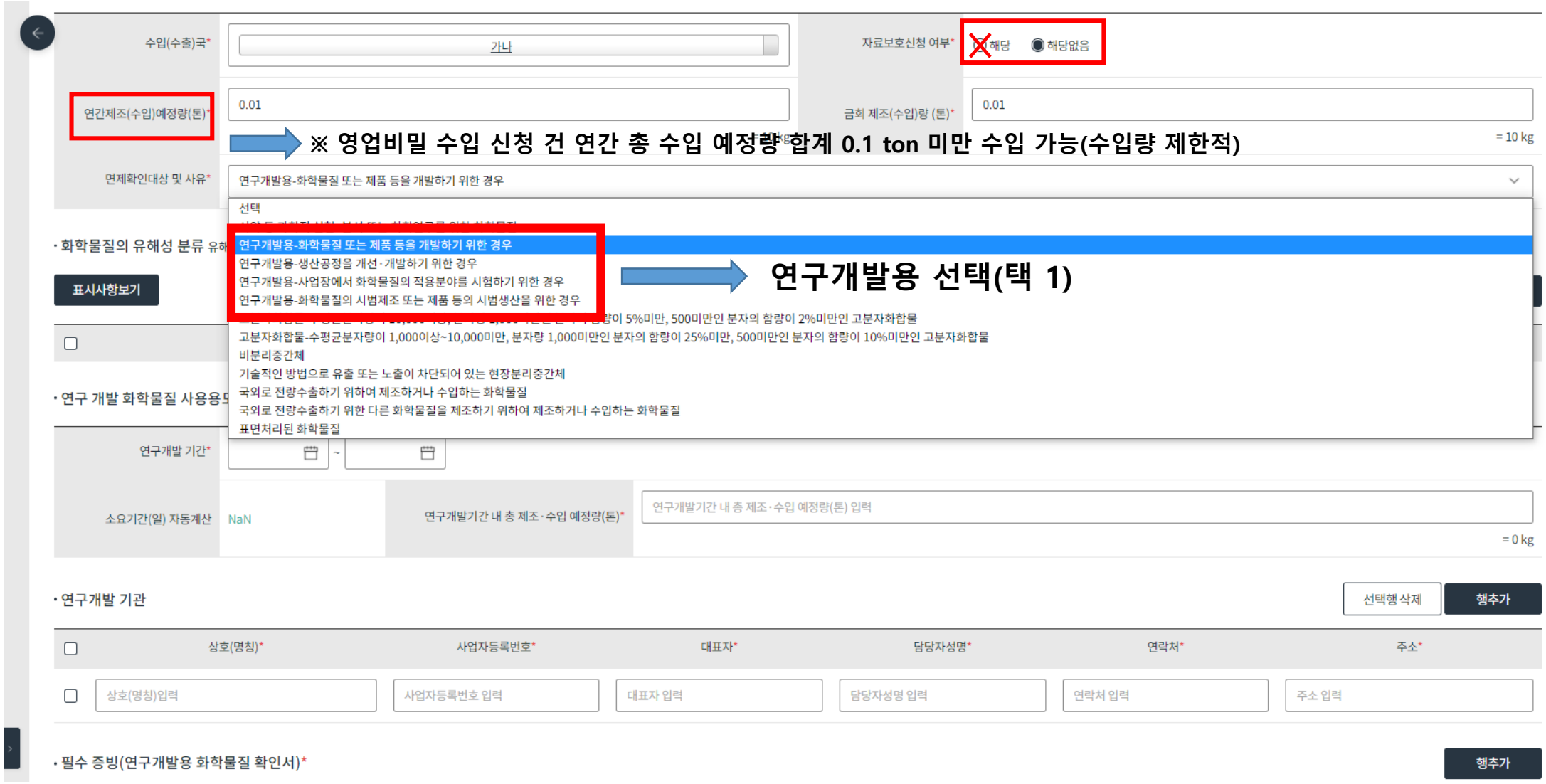

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신청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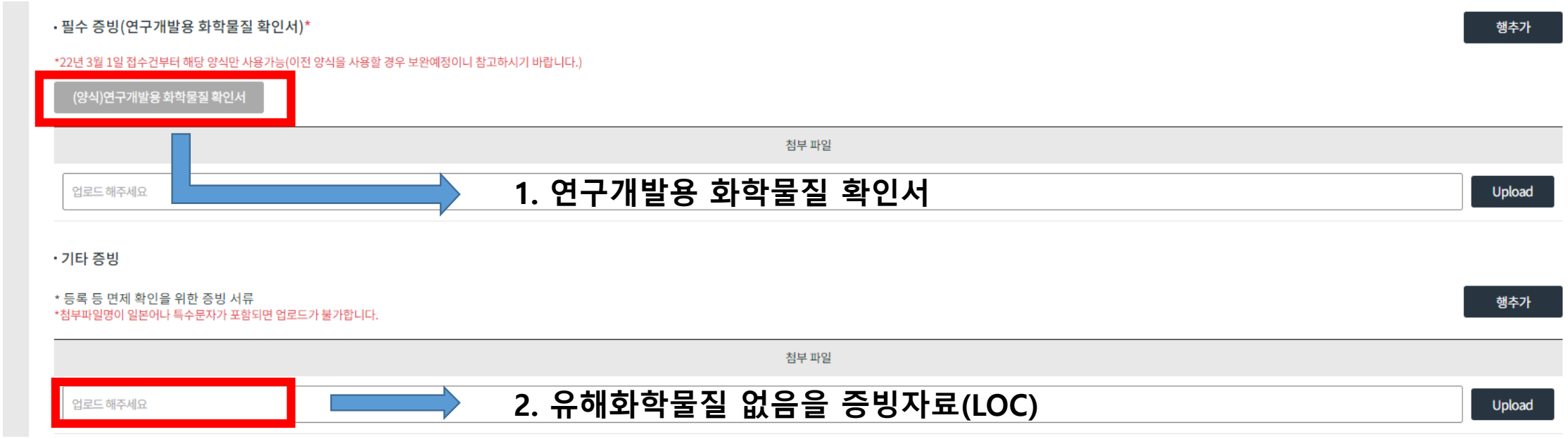

신청 시 제출서류안내

1.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: (양식)연구개발용 화학물질 확인서 클릭 후 양식 다운로드
2. 유해화학물질 없음을 증빙자료(LOC):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사가 『화학물질관리법』 의거한 양식으로 작성
3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: 수입자가 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의거하여 16가지 항목을 한글로 작성

   단, 아래 ① or ② 에 해당할 경우 해외제조사가 작성한 영문 MSDS 제출 가능

   ① MSDS 2번 항목 유해성, 위해성이 없는 경우

   ② 실험실에서만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화학물질('온라인신청사항-구체적용도'란에 해당 내용 필수 기재)

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Q&A

- **Q: 영업비밀 화학물질에 대한 개수 제한이 있나요?**
- A: 영업비밀 화학물질에 대한 개수 제한은 없으나 사업장 기준 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 미만 수입이 가능합니다.

- **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의 연간 총 수입예정량 합계 0.1ton 미만 수입 기준이 궁금합니다.**
- A: 여러 개의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제품명이 다르더라도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모두 동일한 하나의 화학물질(X)로 간주합니다. 즉 사업장에서 영업비밀로 신청한 X의 연간 총 합이 0.1ton 미만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- **Q: 수입하는 제품에 몇 개의 영업비밀 화학물질이 있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나요?**
- A: 제품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한 개의 화학물질로 보고 제품 내 함유량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**Q: 수입하는 제품의 영업비밀화학물질의 함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?**
- A: 최대 함량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- **Q: 선임된 자(OR)로 영업비밀 화학물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?**
- A: 선임된 자는 현재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진행중입니다. 환경부 답변에 따라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- **Q: CAS No.가 없는 화학물질도 영업비밀 화학물질인가요?**
- A: CAS No.가 부여되지 않은 것인지,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제조사에 확인해야합니다.

영업비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신고면제확인 Q&A

- **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이어서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?**
- A: 유해화학물질은 영업비밀 화학물질로 면제확인신청이 불가합니다. 화학물질정보시스템(NCIS)에서 해외제조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없는 경우에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→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LOC 작성 시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

- **Q: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자료보호신청이 가능한가요?**
- A: 자료보호대상 화학물질은 신청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보호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- **Q: MSDS 제출 시 '실험실에서만 연구개발하는 화학물질' 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?**
- A: 『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 제11조제2항(MSDS작성방법)』에서 '실험실에서 시험·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'인 경우만 영문 MSDS 자료로 인정됩니다. 실험실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한글 MSDS자료를 제출 바랍니다.

- **Q: 제품에 공개된 화학물질은 유해성 ·위험성이 있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은 유해성·위험성이 없습니다. 이 경우 영업비밀 화학물질만 면제신청하면 영문MSDS 제출이 가능한가요?**
- A: 제품 기준 유해성·위험성이 있는 경우 한글 MSDS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영문MSDS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